

미국 무역대표부 2013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여 혁 종*

1.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1일에 2013년 “국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 종합무역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해 USTR이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서 미국의 61개 교역국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 내용이 담겨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각국의 수입정책, 수출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여 왔다.

통상 관련 미국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국(41쪽), EU(23쪽), 일본(15쪽) 관련 내용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많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총 9 페이지 분량으로 작년보다 1 페이지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무역장벽이 광범위하게 제거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규제수립 및 이행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2013년도 무역장벽보고서 중 ICT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무역장벽 보고서 중 ICT 분야 주요내용

(1) 방송쿼터

USTR은 우리나라 방송분야 편성규제와 관련, 외국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규제 제도와 분야별 편성규제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외국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의 반기별 방영시간의 20%, 혹은 케이블 방송 또는 위성 방송 반기별 방영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쿼터 내에서, 외국 영화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되는 전체 영화의 75%, 그리고 케이블 방송 및 위성 방송에서 방영하는 전체 영화의 80%까지 방송시간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연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하는 전체 애니메이션의 55%, 그리고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전체 애니메이션의 70%까지 방송시간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국의 외국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콘텐츠를 분기별로 80%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내 콘텐츠의 의무편성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디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이러한 오래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2) 더빙 및 지역광고에 대한 제한

USTR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보이스오버(더빙) 및 외국 재전송 채널의

지역광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금지사항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 재전송 채널의 접근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의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통신

보고서는 외국 위성서비스 사업자가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최종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위성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고려하고, 현지 사업자를 주재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였을 때 이러한 제한은 외국 위성서비스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4) 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USTR은 한국 역외 지역에 소비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내규제가 온라인 판매 및 결제수단 등 일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시장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보상의 이유로 고해상도 이미지 및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에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한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온라인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사업자들의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지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고, 미국은 이의 이행사항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 투자장벽

한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49%로 제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부터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소재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¹⁾

한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연관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전송망사업자(NO), 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소유를 49%까지 제한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외국인 참여는 33%까지 제한되고 있으며, 외국 위성 재전송 채널은 운영되는 채널 총수의 20%까지 제한되고 있다. 보도 전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운영자, 신호 전송망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20%까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3. 기술장벽 보고서 중 한국 ICT 관련 주요내용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으로 양자 회의를 통해 TBT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한미 양자통상회의를 통해 중복적인 전기안전심사 배제, 전자 제품에 대한 최신 국제 기준 도입 등을 합의하였다.

(1) 정보기술 제품 전자 안전 규제

USTR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표준원 등과 정보통신기기의 안전기준 규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여 ICT 제품의 안전기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1) NTE 보고서에서는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으나, 실제 협상결과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가 100% 허용된 것이고,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49%이다. 또한 유·무선 통신시장 최대사업자인 KT와 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타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정하여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하였다.

(2) 핸드폰 특정 흡수율 표기

2012년, 한국은 휴대폰 전자파 등급을 2등급으로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 고시안을 공개하였으나, 미국은 동 등급 구분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두 등급 사이에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고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양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결 어

이번에 발표한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및 금융 등의 분야와 함께 우리의 ICT 분야 기술규제에 대해 미측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방송분야에 대한 서비스 및 투자제한과 더불어 정보기술제품 전자안전 규제, 휴대전화 특정 흡수율 표기 등의 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제기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국내 규제제도와 국제통상법과의 규범정합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USTR (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_____ (2013).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port